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 선고 2021가합5279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2. 6. 23 선고 2022나20091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 선고 2021가합52797 판결

전문

원 고 A종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론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21. 11. 25.

주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,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/4 지분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은 2021. 4. 30., 피고 C은 2021. 5. 2., 피고 D은 2021. 3. 31.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

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재판장 판사 송인경, 판사 차유나, 판사 오정민

별지